

# KCGS Report

제13권 8호 | 통권 제164호  
2023.8.



한국ESG기준원

---

## KCGS Report 제13권 8호

발행일 : 2023년 8월 31일

발행인 : 심인숙

발행처 :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http://www.cgs.or.kr)

제작 :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 영등포, 라00532

---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 KCGS Report

제13권 8호 | 2023. 8.

## ● ESG 동향

최근 전자주주총회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
국내 여성이사 선임 현황 분석	10

## ● Global News

1. 영국 DBT, ISSB 기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수립 발표	18
2. 미국 내 Anti-ESG VS Pro-ESG 관련 최근 이슈	20

# 최근 전자주주총회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박은빈\*

-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전자주주총회를 확대 시행해온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불비함에 따라 올해 초 정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8월 말 현재 전자주주총회 실시 기반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 ▶ 전자주주총회는 국내 주주총회 운영 문제를 보완하고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소통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주주권을 약화시킬 위험도 공존함
- ▶ 따라서 여러 국제 자문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요소들을 참고하여 현장 주주총회에서의 주주들의 권리가 전자주주총회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할지라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검토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존의 많은 대면 활동들의 비대면화가 진행되었던 가운데 주주총회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대면 방법에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대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19 발생 후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모습을 보임
- 미국의 전자주주총회 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업 Boardridge에 따르면 전자주주총회 개최 기업 수는 2019년 325사에서 2020년에는 1,957사에 달하여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2,377사로 전년 대비 약 21% 가량 증가함<sup>1)</sup>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전자주주총회 실시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며, 2019년 (출석)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기업이 5사에 그쳤던 반면 2020년에는 113사에 이룸<sup>2)</sup>
- 그 외에도 독일,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홍콩 등 많은 국가들이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 및 실무 지침 등을 마련함<sup>3)</sup>

\* 본 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 선임연구원, eunbin@cgs.or.kr

1) Boardridge(2022),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2021 full-year facts and figures, p.1.

2) 서지원(2022),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입법 동향 및 사례 연구, 법학논문집 제46권 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p.147; p.151.

3) 서지원(2022), 위의 논문, pp.146-178; Asean Briefing(2023.6.7.), "Singapore Allows Companies and Trusts to Adopt

- 우리나라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시작했으나 우리나라 상법상 완전한 전자적 방법의 주주총회 개최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법무부는 올해 초 2023 법무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상법을 개정하여 전자주주총회 제도(통지, 투표, 회의 전반 전자화)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8월 말 현재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우리나라에서도 주주총회 영상 실시간 송출, 실시간 질의 등과 같이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전자적 방법의 참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상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에 2023년 1월 법무부는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였고,<sup>4)</sup> 2023년 8월 말 현재 전자주주총회 실시 기반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sup>5)</sup>
  -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8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올해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빠르면 내년 주주총회부터 전자주주총회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주주총회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이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을 살펴본 후 현재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검토 및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의미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전자주주총회의 개념

- 넓은 의미에서 전자주주총회란 주주들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참석하는 주주총회를 통칭하는 것으로, EU 집행위원회의 주주권리지침(Shareholder Rights Directive)은 전자주주총회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유럽연합 내 국가들은 전자적 수단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2007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주주권리지침<sup>6)</sup>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함
  - (a) 실시간 전송(real-time transmission of the general meeting)
  - (b) 실시간 양방향 소통(real-time two-way communication enabling shareholders to address the general meeting from a remote location)

Virtual Annual Meetings”; Mayerbrown(2022.11.28.), “Hong Kong Revises Company Laws To Support Fully Virtual Shareholders’ Meetings”

4) 법무부 보도자료(2023.1.26.), “미래변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5) 법무부(2023.8.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23-315호)

6) Directive 2007/3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exercise of certain rights of shareholders in listed companies, Article 8(Participation in the general meeting by electronic means)

- (c) 현장에 참석한 대리인을 통한 투표 외에, 주주총회 전 혹은 주주총회 진행 중 투표할 수 있는 방법(a mechanism for casting votes, whether before or during the general meeting, without the need to appoint a proxy holder who is physically present at the meeting)
- 이상의 구분은 각각 독립된 방법으로 구현될 수도 있지만 두 개 이상의 방법을 결합하여 구현될 수도 있으며 각 방법들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짐
  - (a) 일방향적인 전송으로 주주총회의 실시간 공개성을 넓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주주들의 직접적인 주주총회 참여 확대 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움. 현재 국내 일부 기업들도 웹캐스팅(web-casting)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함<sup>7)</sup>
  - (b) 원격으로 참석한 주주들이 직접 질의하고 사측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에 한해 주주총회 온라인 질의 및 답변을 시행함<sup>8)</sup>
  - (c) 투표 방식에 관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자투표도 이 방법에 포함됨. 다만, 현재 국내 전자투표는 주주총회 전 행사로 제한됨
- 이후 개정을 거친 주주권리지침<sup>9)</sup>에서 유럽연합 내 국가들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함
- 본 논의에서는 온라인 참석을 상법상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자주주총회로 정하며,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전자주주총회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임
  - 전자주주총회는 주주들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지만<sup>10)</sup>, 본 논의에서는 주주총회 온라인 참석을 상법상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 즉 온라인으로 참여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총회를 전자주주총회로 정함
  - 현장대체형(Virtual-only) 전자주주총회는 물리적으로 주주들이 모이는 특정 소집 장소, 즉 ‘현장’ 없이 온라인만으로 개최하는 주주총회로,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나 디지털 격차, 회사 측의 자의적 운영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음
    -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대해서 virtual-only shareholders meeting(Annual

7) 2023년 주주총회에서 실시간 중계를 실시한 기업은 SK텔레콤, SKC,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삼성전자, LG유플러스 등이 있음  
 8) 2023년 주주총회에서 실시간 중계를 실시한 기업 중 많은 기업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양방향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구현 정도에는 차이가 있음. 예컨대,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 주주들의 질의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답변하였으나 일부 기업은 실시간 질의는 접수하지 않으며 사전에 접수한 질의만 답변함  
 9) Shareholder Rights Directive(2019.6.5). 2007년 제정 이후 개정은 2017년에 이루어졌으며 이를 요약하여 2019년 5월 6일 Shareholder Rights Directive가 발표됨. 2017년 개정안은 Directive (EU) 2017/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17 amending Directive 2007/36/EC as regards the encouragement of long-term shareholder engagement 참고  
 10) 오덕교(2015,6),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핀테크(ICT기술)의 활용, CGS Report 제5권 8호,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 기준원), p.4.

- General Meeting) 혹은 virtual shareholders meeting의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논의에서도 ‘버추얼’이라는 영어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함
- 2023년 8월 말 현재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에서는 ‘완전전자주주총회’로 명시됨
- 현장병행형(Hybrid) 전자주주총회는 물리적 공간인 소집 장소에서의 주주총회 개최와 온라인 개최(온라인 출석 인정)를 병행하는 것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나 회사의 운영 부담이 크다는 점과 회사 측의 자의적 운영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음
-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Hybrid shareholder meeting을 사용하며 국내 논의에서 ‘하이브리드 전자주주총회’라고도 함
- 2023년 8월 말 현재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에서는 ‘병행전자주주총회’로 명시됨

〈표 1〉 전통적 방식의 주주총회 및 전자주주총회 비교

	물리적 장소	온라인 중계	온라인 실시간 의사진행 (질의 및 응답 등)	온라인 실시간 의사결정 (투표)
전통적 방식의 주주총회	○	X	X	X
현장대체형(Virtual Only) 주주총회	X	○	○	○
현장병행형(Hybrid) 주주총회	○	○	○	○

자료 : 김신영(2021),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을 위한 회사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35권 2호, 한국기업법학회, pp.37-38 재구성

### 최근 전자주주총회 논의 동향

- 전자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주주총회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sup>11)</sup>
- 그러나 기술적 불확실성에 따른 운영상의 제한과 온라인 회의의 특성상 경영진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전자주주총회가 근본적으로 내포하는 한계들로 인해 주주권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기술적 불확실성에 따른 운영상의 제한은 접속 장애, 통신 장애 등의 형태로 발생되어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가능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한계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일정 부분 해소 가능함
- 온라인 회의 특성상 경영진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는 아래와 같은 예가 있음<sup>12)</sup>

11) 송민경(2021.12), 의결권 서비스 인프라 및 법적 동향과 시사점 - ESG 요소를 고려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 pp.44-48.

- 온라인 회의에서는 경영진이 주주총회 로그인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주주를 배제할 수 있음
  - 주주들의 질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의장이 주주들의 질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답변하거나 특정 주주를 배제한 채 질의를 선별하는 등 경영진에 불리한 질의를 의도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 최근 Schwartz-ziv(2021)의 연구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가 주주의 질의권 행사와 소통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실증함<sup>13)</sup>
- 해당 연구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중 녹취록 확보 등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주주총회 총 1,320건(오프라인 주주총회 245건,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1,075건)을 대상으로 함
  - 전 대상 기업 분석 결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소요시간, 질의응답 시간 등은 전통적인 방법의 대면/오프라인 주주총회에서 소요되는 시간의 절반 이하로 드러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소통이 매우 제한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주권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표 2〉 Panel A 참고)
    -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평균 소요시간은 17.9분으로 전통적인 대면 방식 주주총회의 소요시간 39.2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또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질의에 할당된 시간은 평균 3분으로 전통적인 대면 방식의 주주총회에서 질의응답에 할당된 시간인 12.1분의 1/4 수준에 그침
  - 특히,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이 아닌 환경적 필요에 의해 대면 주주총회에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전환한 기업들에 한해 살펴볼 때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사업/안건 설명 시간, 질의 시간 등이 대면 주주총회 대비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주주권 약화 특성을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표 2〉 Panel B 참고)
    -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주주총회를 개최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전환한 기업들은 경영진이 유리한 입장에서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주주총회 개최 형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환경적 필요에 의해 주주총회 개최 방식을 바꾼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음
    - 해당 기업들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전체 소요시간 및 사업 설명시간은 대면 주주총회 대비 각각 17%, 33% 감소하였고 전체 질의시간과 개별 질의에 배정된 시간도 각각 16%, 23% 감소함

12) 이승희(2022.12),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도입 방안 검토 -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주주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연구소, p.5.

13) Miriam Schwartz-Ziv(2021.4), How Shifting from In-Person to Virtual-Only Shareholder Meetings Affects Shareholders' Voice,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 Finance Working Paper No. 748/2021, 재인용: 이승희(2022), pp.5-7.

- 즉, 전략적 의도가 아닌 환경적 필요에 의해 주주총회 방식을 변경한 기업들 또한 대면 주주총회 대비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권리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내재적 취약점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

〈표 2〉 오프라인(대면) 주주총회(주총) 및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 비교

	오프라인 (대면) 주총(1) (분)	현장대체 전자주총(2) (분)	(1) - (2) (1) (%)	대면 주총 기업 수 (사)	현장대체 전자주총 기업 수 (사)
<b>Panel A : 전 분석 대상 기업 평균</b>					
전체 소요 시간	39.2	17.9	-54%	245	1,075
사업설명 시간	14.6	4.3	-71%	245	1,075
안건 설명 시간	13.7	9.8	-28%	245	1,075
전체 질의 시간	12.1	3.0	-75%	245	1,075
공개된 질의 수	4.9	1.6	-67%	245	1,075
개별 질의에 배정된 시간	2.7	1.8	-33%	141	362
한 개 이상의 질문에 답한 기업 비율	58%	34%			
S&P500 해당 비율	64%	20%			
<b>Panel B : 코로나19 이전 대면 주주총회, 코로나19 이후 현장대체형 주주총회 개최 기업<sup>1)</sup> 평균</b>					
전체 소요 시간	39.4	32.7	<b>-17%</b>	125	125
사업설명 시간	14.3	9.6	<b>-33%</b>	125	125
안건 설명 시간	14.0	13.2	-6%	125	125
전체 질의 시간	10.7	9.0	<b>-16%</b>	125	125
공개된 질의 수	4.9	4.7	-4%	125	125
개별 질의에 배정된 시간	2.6	2.0	<b>-23%</b>	82	82
한 개 이상의 질문에 답한 기업 비율	66%	66%			
S&P500 해당 비율	72%	72%			

자료 : Miriam Schwartz-Ziv(2021.4), pp.54-55 재구성

주 : 1)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주주총회로 개최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전환한 기업.

즉, 같은 기업이 코로나 전후로 주주총회 개최 방식을 바꾼 경우임

- 이상의 맥락과 일치하듯, 미국 기관투자자협회(Council of Institutional Investors, 이하 “CII”)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은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지지하지만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는 반대 입장을 취함
- CII는 2017년 발표한 자료에서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방법(tips) 중 하나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려면 하이브리드(현장병행형)로 해야 하며 하이브리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면 실시간 영상 송출, 실시간 주주들의 질의 공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함<sup>14)</sup>

14) CII(2017), Build a better meeting, pp.2-4.

- 다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따라 기업이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 입장을 유연히 했지만 이때에도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이 오프라인 주주총회 참석할 때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함<sup>15)</sup>
-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Glass Lewis도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는 찬성하지만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는 반대하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가 개최될 때에는 주주들에게 오프라인 주주총회에 참석할 때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권위 있는 국제 단체인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이하 “ICGN”)는 높은 수준의 상호 소통적인 전자주주총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로 네 가지를 제안했으며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는 대면 주주총회의 기능을 동일하게 재현하는 주주총회라는 입장을 최근까지도 유지하고 있음<sup>16)</sup>
- ICGN이 제안한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네 가지 요소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CII가 주주 중심의 전자주주총회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요소와 상당 부분 일치됨
  - ① 음성만 지원하는 전자주주총회 형식은 부적절하며 반드시 영상을 지원해야 함.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중요한 의의는 경영진과 대면하여 그들에게 직접 질의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영상임
  - ② 전자주주총회 참석자는 실시간 투표가 가능해야 함
  - ③ 전자주주총회 참석자는 이사회에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답변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재차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
  - ④ 사전 혹은 회의 진행 중에 이사회나 경영진에게 제기된 모든 질문은 공개되어야 함. 이상적으로는 전통적인 주주총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의와 공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함

## 결론 및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소통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주주권을 약화시킬 위험도 공존함
-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주총회는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전히 40%의 국내 상장사는

15) CII(2022.9), Corporate Governance Policies: 이승희(2022) 재인용

16) ICGN, Shareholder Meetings:The New Virtual Normal,

<https://www.icgn.org/icgn-insights-article-shareholder-meetings-new-virtual-normal> (접속일 2023.8.7.)

-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sup>17)</sup> 등 국내 기업의 주주 참여 독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자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주주총회가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하지 않는다면 즉, 주주들의 참여와 소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실현된다면 실질적으로 주주 권리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시에도 주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임
    - 세계 최초로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거의 모든 주가 현장대체형/현장병행형 주주총회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sup>18)</sup> 가장 오래되고 활발한 전자주주총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현장대체형 주주총회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약화시키는 문제들이 나타남
    - 주주총회 활성화 및 주주권 보호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상기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대체형 주주총회를 실제로 도입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현장병행형 주주총회 도입 시에도 여러 국제 자문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제도를 설계하여 기존 국내 기업들의 주주총회 운영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7) 이승희(2021.8), 2021 정기주총 전자투표·온라인주주총회 도입 현황, 이슈&분석 2021-02호, 경제개혁연구소, p.3.

18) 현재 뉴멕시코주를 제외한 미국의 49개 주에서 현장대체형/현장병행형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https://www.broadridge.com/infographic/states-that-allow-and-prohibit-virtual-shareholder-meetings> (최근 접속일 : 2023.8.7.)

# 국내 여성이사 선임 현황 분석

구현지\*

- ▶ 국제적으로 여성이사의 의무 선임이 법제화되는 추세에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해 여성이사 1인 이상을 의무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동 법안의 유예기간이 최근 종료됨
- ▶ 또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 등에서 의결권 행사 시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지침을 추가하는 등 여성이사 선임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 따라서 한국ESG기준원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5년간 여성이사 선임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여성이사 관련 세부 현황을 점검해보고자 함
- ▶ 분석기간 동안 국내 상장기업 전반적으로 여성이사의 선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관찰되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기업들에서 그 증가폭이 더욱 크게 나타남
- ▶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 중 여성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10사로 확인되며,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들의 여성이사 선임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서론

- 이사회 성별 다양성 제고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이사회 내 여성이사 선임을 의무사항으로 도입하고 있음
  - 유럽은 여성이사 할당제에 관해 가장 선제적으로 의무화 및 제재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프랑스의 경우 이사회 40% 이상을 여성이사로 하고 미준수 시 여성을 제외한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 보수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여성이사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9년까지는 여성이사를 1인 이상<sup>1)</sup> 선임하도록 하고 2021년까지는 4인 이하 이사회 1인 이상, 5인 이사회 2인 이상, 6인 이상 이사회 3인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준수하지 않을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white07@cgs.or.kr

1) 이사회의 이사 총수를 불문하고 여성이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함

- 경우에는 10만 달러(두 번째 위반부터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2)</sup>
-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루어짐
  - 다만, 한국의 경우 앞서 기술한 유럽, 미국 등의 국가와 달리 미준수 시 구체적인 제재 부과 등의 강행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개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이사회 구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종료됨에 따라, 적용 대상인 기업들의 개정 법안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동법은 2022년 8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며,<sup>3)</sup>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의 경우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함) 중 이사회가 남성 이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등기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함
- 또한, 법적 규제화 외에도 글로벌 기관투자자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에서 의결권 행사 시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면서 국내 상장기업들이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BlackRock은 이사회에 여성이사가 없을 경우 이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보유하고 있음<sup>4)</sup>
  - ISS는 이사회 성별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사회추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니어 구성원 등 이사 후보 추천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반대할 것을 권고하고<sup>5)</sup>, Glass Lewis는 이사회추천위원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의 선임을 반대할 것을 권고함<sup>6)</sup>
  - 한국ESG기준원은 2023년 2월 6차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가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경우 다수 성(性)에 해당하는 모든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함<sup>7)</sup>
  - 이처럼 이사회 다양성 확보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본 리뷰에서는 국내 상장사 전체의 최근 5년간 여성이사 선임 추이를 살펴보고,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여성이사 선임 여부 및 선임된 여성이사의 세부 현황에 대해

2) 이사회 성별 구성 관련 각국의 규제와 국내 현황, 자본시장포커스 2020-02호, 홍지연, 2020.01.21.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부칙 제1조에 따르면,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법 시행 당시 개정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Proxy voting guidelines for Asia, BlackRock, 2023.01.

5) KOREA Proxy Voting Guidelines Benchmark Policy Recommendations, ISS, 2022.12.

6) 2023 Policy Guidelines, Glass Lewis, 2022.

7) K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KCGS, 2023.02.

## 분석해보고자 함

## 국내 상장기업의 최근 5년간 여성이사 선임 추이

- 2019년부터 2023년 1분기<sup>8)</sup>까지(이하 '분석기간') 전체 상장기업(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에서 여성이사를 선임한 기업의 수와 해당 기업들에 재임 중인 여성이사의 수 모두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9년에 여성이사를 선임한 상장기업의 수는 409사(19.22%)이었던 것에 비하여, 2023년 1분기에는 677사(28.91%)까지 증가함
- 동기간 전체 상장기업에 재임 중인 여성이사의 수는 477명(4.26%)에서 848명(6.7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직위별(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여성이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여성 사내이사의 수는 약 20% 증가한 것에 반해 여성 사외이사의 수는 약 3.5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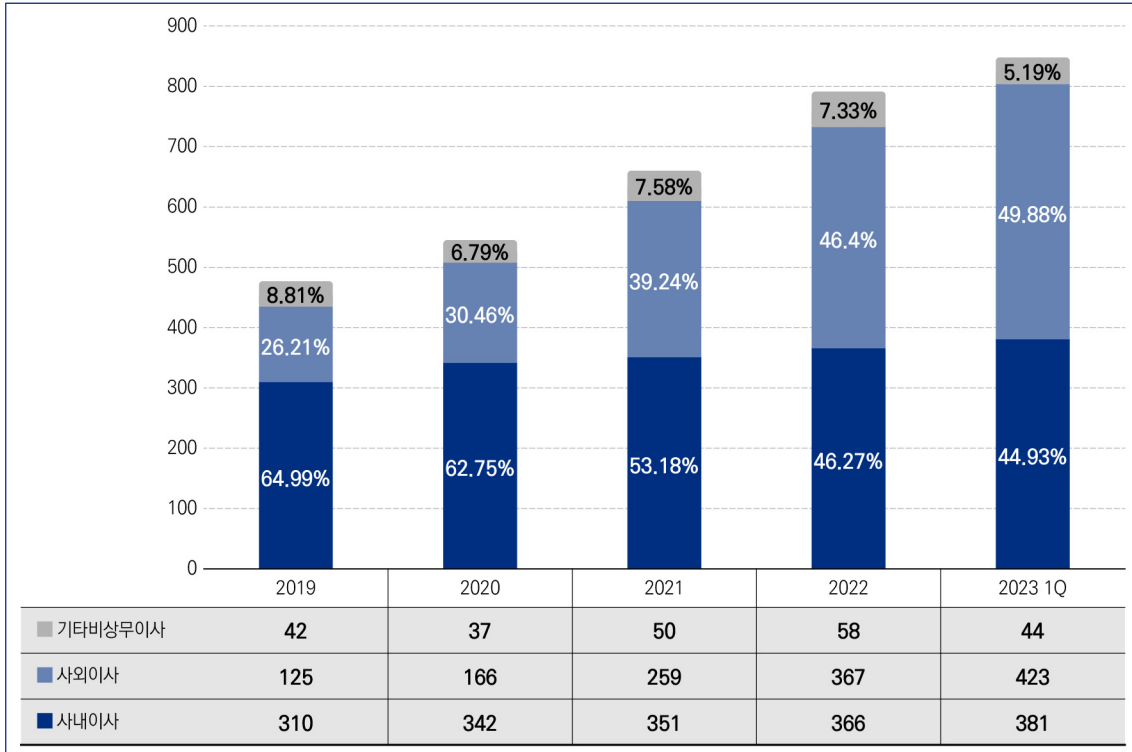
〈표 1〉 전체 상장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전체 상장기업 수(사)	2,128	2,230	2,330	2,446	2,342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상장기업 수(사)	409	458	536	635	677
<b>여성 등기이사 선임 기업 비율(%)</b>	<b>19.22%</b>	<b>20.54%</b>	<b>23%</b>	<b>25.96%</b>	<b>28.91%</b>
전체 상장기업의 등기이사 수(명)	11,194	11,688	12,221	12,843	12,509
여성 등기이사 수(명)	477	545	660	791	848
<b>여성 등기이사 비율(%)</b>	<b>4.26%</b>	<b>4.66%</b>	<b>5.4%</b>	<b>6.16%</b>	<b>6.78%</b>

출처: 각 회사 2019~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 보고서, DART

8)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각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는 분기보고서 기준임

〈그림 1〉 전체 상장기업의 직위별 여성이사 수 및 비율



출처: 각 회사 2019~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 보고서, DART

-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이하 ‘적용 대상 기업’)과 미적용 기업을 나누어 여성이사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및 그림에서와 같이 적용 대상 및 미적용 기업 모두에서 여성이사 선임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다만 적용 대상 기업의 경우, 여성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2019년에 30사(20%<sup>9)</sup>)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72사(90.53%)에서 여성이사를 선임하였고, 여성이사의 수 또한 35명(3.16%<sup>10)</sup>)에서 219명(15.36%)까지 증가하여 분석기간 동안의 증가폭이 미적용 기업 대비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인한 여성이사 선임 의무화가 여성이사 선임의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함
  - 또한, 미적용 기업에 비해 적용 대상 기업에서 선임된 여성이사의 직위가 대부분 사외이사인 점도 특징적임
  - 이처럼 최근 신규 선임된 여성이사가 대부분 사외이사인 까닭은, 주로 내부 인사로 기용되는 사내이사직의 특성상 기업 내부의 여성 인재풀(pool)이 한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9)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20%를 의미함

10)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전체 등기이사 수의 3.16%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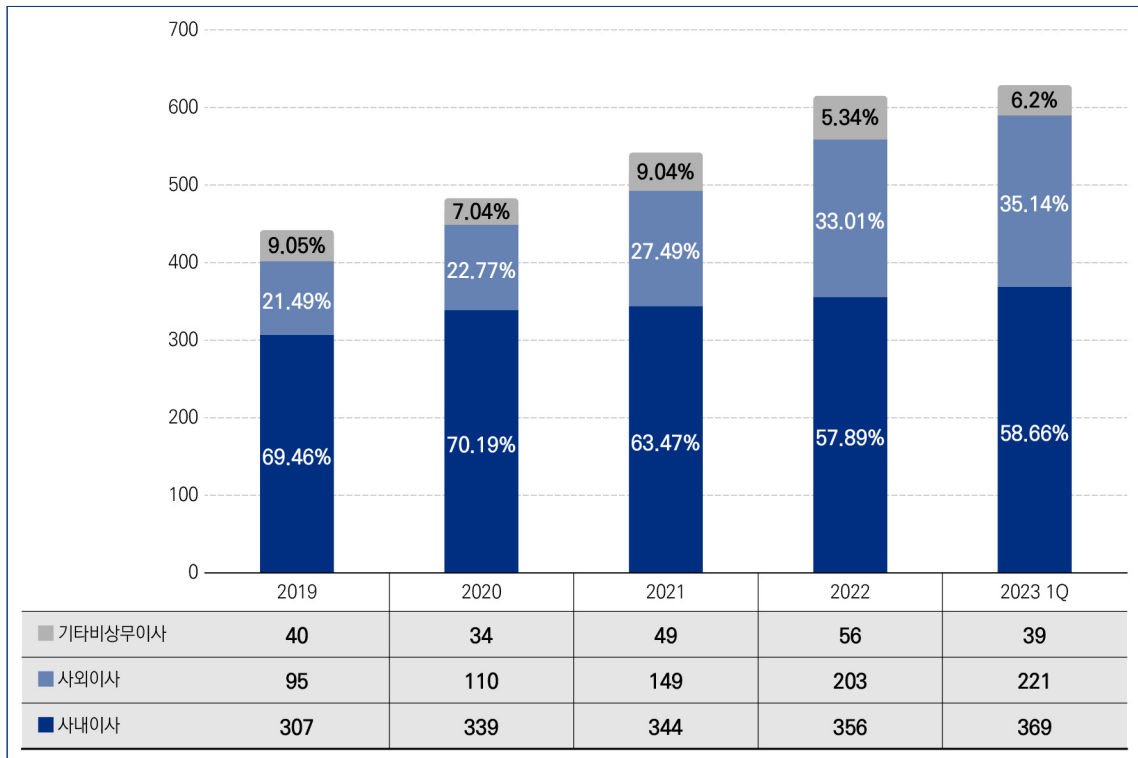
-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본시장법 준수가 어려운 사유로서 '승진시킬만한 여성임원 후보군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sup>11)</sup>,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다수의 기업이 여성 사내이사 선임 대신 외부 여성 인사의 사외이사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됨

〈표 2〉 미적용 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기업 수(사)	1,978	2,075	2,159	2,269	2,152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기업 수(사)	379	405	436	485	505
<b>여성 등기이사 선임 기업 비율(%)</b>	<b>19.16%</b>	<b>19.52%</b>	<b>20.19%</b>	<b>21.38%</b>	<b>23.47%</b>
기업의 등기이사 수(명)	10,085	10,517	10,956	11,511	11,083
여성 등기이사 수(명)	442	483	542	615	629
<b>여성 등기이사 비율(%)</b>	<b>4.38%</b>	<b>4.59%</b>	<b>4.95%</b>	<b>5.34%</b>	<b>5.68%</b>

출처: 각 회사 2019~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 보고서, DART

〈그림 2〉 미적용 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현황



출처: 각 회사 2019~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 보고서, D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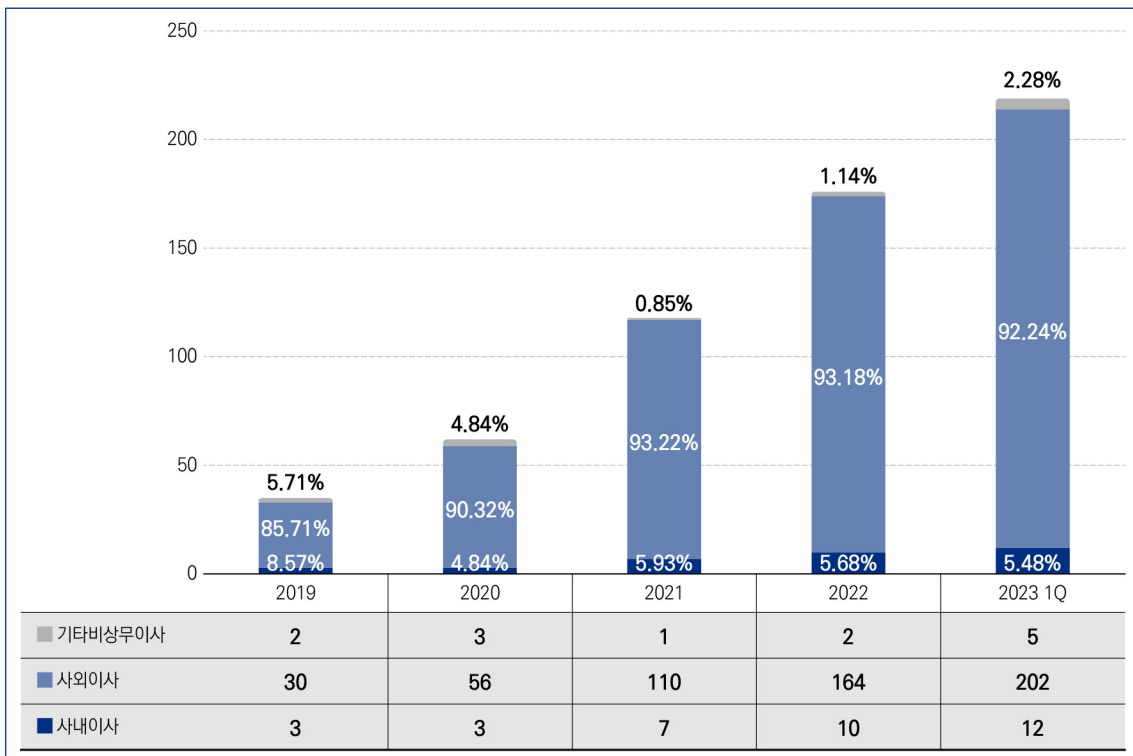
11) ESG경영 관점에서 여성임원 할당제 의미와 과제, 임희정, 젠더리뷰 61호, 2021.06.

〈표 3〉 적용 대상 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기업 수(사)	150	155	171	177	190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한 기업 수(사)	30	52	100	150	172
<b>여성 등기이사 선임 기업 비율(%)</b>	<b>20%</b>	<b>33.55%</b>	<b>58.48%</b>	<b>84.75%</b>	<b>90.53%</b>
기업의 등기이사 수(명)	1,109	1,171	1,265	1,332	1,426
여성 등기이사 수(명)	35	62	118	176	219
<b>여성 등기이사 비율(%)</b>	<b>3.16%</b>	<b>5.29%</b>	<b>9.33%</b>	<b>13.21%</b>	<b>15.36%</b>

출처: 각 회사 2019~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 보고서, DART

〈그림 3〉 적용 대상 기업의 여성이사 수 및 구성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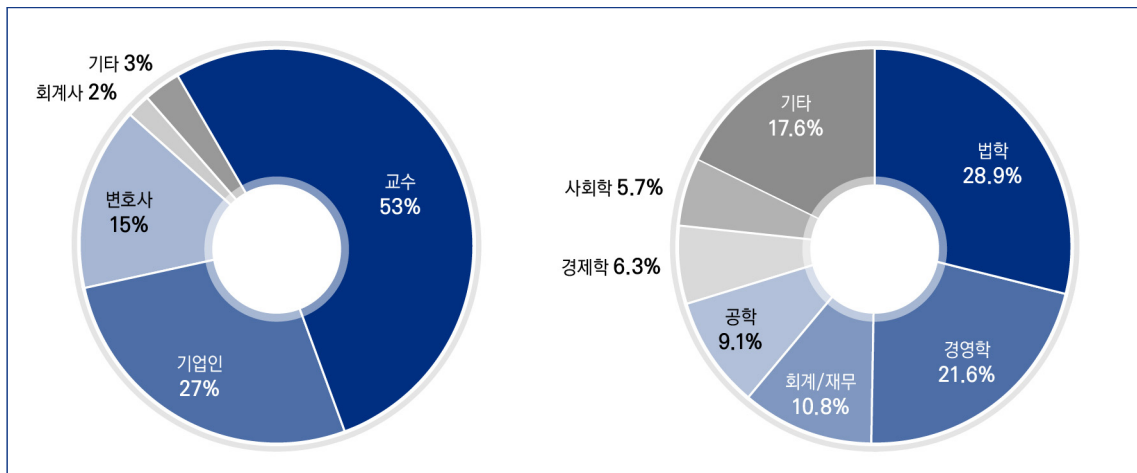
출처: 각 회사 2019~2022년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 보고서, DART

###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세부 현황

- 2022년 말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은 177사이며, 이들 기업 중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이전까지 여성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기업은 27사임
- 위 27사 중 10사는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여성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아,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의 향후 여성이사 선임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여성이사 선임 의무 부과 기준은 자산 규모(금융회사의 경우 자본 규모)이므로, 자산총액 규모가 2조 원에 가까운 기업들의 여성이사 선임 추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자산총액 1조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인 상장기업은 36사이며, 이 중 11사(30.56%)가 여성이사를 선임함
-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에 선임된 여성이사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선임된 여성이사의 직위는 사외이사가 가장 많았고, 직업군은 대부분 교수였으며, 전문 분야로는 법학과 경영학 분야가 다수를 차지함
  - (직위) 여성이사 176명 중 사외이사가 164명(93.2%)이고 사내이사과 기타비상무이사는 각각 10명과 2명인 것으로 확인됨
  - (직업) 여성이사의 직업군은 교수, 기업인,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분류되고, 이 중 교수가 93명(52.8%)이고 기업인이 48명(27.3%)이었으며 변호사는 26명(14.8%), 회계사는 4명(2.3%)으로 확인됨
  - (전문 분야) 법학을 전문 분야로 하는 여성이사가 51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학이 38명(21.6%), 회계/재무 분야가 19명(9.1%)이었으며, 이 다음으로는 공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여성이사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4〉 적용 대상 기업의 여성이사 수 및 구성 비율 변화<sup>12)</sup>



출처: 각 회사 2022년 사업보고서, DART

12) 전문분야 중 해당 분야의 전체 대비 비중이 5% 미만인 분야는 기타로 합산하여 계산함

## 결론

- 국내 상장사 전체에서 최근 5년 동안 여성이사의 선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남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여성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화된 점은 국내 기업의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에서도 꾸준히 여성이사의 선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이 이사회 구성 시 이사들의 성별 다양성을 이전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여성이사 선임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 적용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여성이사의 직위 대부분이 사외이사로 확인됨
  - 해당 기업들에서 사외이사로 여성이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사유는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단기간 내 여성임원을 선임할 때, 사내이사보다는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여성임원 대부분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현상에 대해, 기업들이 법적 요건을 쉽게 충족하기 위해 성별 외에 다른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 사외이사 1인을 형식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sup>13)</sup>
  -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본시장법 개정의 취지대로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를 통해 이사회 관점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여성 인사를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기업의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내부의 여성 인재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한편,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종료 이후에도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 중 10사가 여성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여성이사 미선임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벌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구체적인 제재가 규정되지 않아 일부 기업들에서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이사 선임 시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기관투자자 및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 등에서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이사 선임 안전에 반대할 지침을 마련하는 등, 최근 이사회 성별 다양성에 대한 자본 시장의 관심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 명성 훼손 및 투자 배제 등의 부정적 영향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

13) 여성이사 할당제의 향후과제, 송지민, 이슈와 논점 제1979호, 2022.08.21.

---

---

## Global News

### 1. 영국 DBT, ISSB 기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수립 발표

김예린\*

- 지난 8월 2일, 영국 기업통상부(DBT, Department of Business and Trade)는 ISSB의 ESG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영국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UK SDS, UK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을 마련할 예정임을 발표함<sup>1)</sup>
- 영국은 온실가스 배출, 기후 리스크 등 환경 및 TCFD와 관련된 지속가능성공시 규정을 제정한 바 있으며, TCFD가 기후공시 모니터링 업무를 ISSB에 이관함<sup>2)</sup>에 따라 ISSB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인 UK SDS를 수립하고자 함
  - (기존 주요 규제 1) Streamlined Energy and Carbon Reporting : 영국 정부가 제정한 규제로 상장사 등 영국의 대기업인 경우, 재무보고서에 에너지 사용량, 탄소발자국,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시해야 함
  - (기존 주요 규제 2) Financial Conduct Authority TCFD Reporting :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제정한 규제로 영국의 상장사 및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사인 경우, TCFD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해야 함
  - (기존 주요 규제 3)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 영국 정부가 제정한 규제로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수익이 5억 파운드 이상인 기업인 경우, TCFD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공시를 해야 함
  
- UK SDS는 기업이 직면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 공시를 규정할 예정임
  - DBT는 ISSB 기준을 승인하여 2024년 7월까지 UK SDS를 수립할 예정이며, 영국의 필요에 의해 독자적으로 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면 ISSB의 글로벌 기준선을 따를 것임을 밝힘
  - 또한, 이후 제정될 모든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영국의 법률 또는 규정은 UK SDS를 기반으로 형성될 예정임
  
- 영국 정부는 ISSB 기준의 승인과 그에 따른 UK SDS의 이행을 위해 2개의 위원회를 설립함
  - 기술 자문 위원회(TAC,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 TAC는 ISSB 기준을 기술적 기반으로 평가하고, ISSB 기준 승인을 위한 권고사항을 DBT를 통해 제공함
  - 정책 실행 위원회(PIC, Policy and Implementation Committee) : PIC는 ISSB 기준과 기존 영국의 법률 및 규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ISSB 기준이 승인된 이후에 영국

---

\*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ESG 데이터팀 연구원, yrkim@cgs.or.kr

1) UK DBT, UK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2023.08.02., <https://www.gov.uk/guidance/uk-sustainability-disclosure-standards>

2) KCGS Report 제13권 7호 Global News 참고

정부와 FCA의 UK SDS 이행을 조율할 예정임

- 자체적인 ESG 공시기준을 마련한 EU와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가 영국과 동일하게 ISSB 기준의 공시기준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됨

---

---

## Global News

### 2. 미국 내 Anti-ESG VS Pro-ESG 관련 최근 이슈

박정민\*

- 지난 8월 10일, 미국 증권산업금융협회(SIFMA, The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는 미주리 주에 제기된 Anti-ESG법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힘<sup>1)</sup>
  - 최근 미주리 주에서 비재무적 목표(non-financial objective)와 함께 투자를 선택하거나 권장하는 펀드매니저에게 추가적인 기록 보관을 요구하는 법안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7월 30일자로 효력이 발생함
    - 이에 따라 펀드매니저는 사회적 목적 또는 비재무적 목적과 관련된 투자 조언을 제공하기 전에 '추가 작성한 문서(state-scripted documents)'에 클라이언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서명해야 함
    - 이는 펀드매니저가 클라이언트를 대신한 자금 운용 과정에서 ESG 관련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협회는 미주리 주 국무장관 존 애쉬크로프트(John Ashcroft)와 SEC 위원 더글라스 자코비(Douglas Jacoby)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미주리 주의 Anti-ESG법은 미국 전역에 동일한 규제체계가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의 연방증권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논거를 내세움
  
  - 올해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로 공화당 중심의 Anti-ESG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음
  - 3월 16일, 플로리다 주지사 론 데산티스(Ron Desantis)를 필두로 미국 19개 주 주지사들은 소위 '개인들을 ESG 운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연합을 발표함
    - 해당 연합은 각 주의 연기금(state pension)을 활용하여, 주 연기금의 펀드매니저가 투자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ESG 약화를 주된 목적으로 함
    - 더 나아가 주 및 지방 단위에서의 ESG 투자 제한 및 관련 규제의 입법화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플로리다 의회에서 진행 중인 Anti-ESG 법안 HB3\*을 모델로 함
- \*HB3 법안 주요 내용: 모든 투자결정에 ESG요인 고려 금지, 외부 펀드매니저는 금전적 요소를 기반으로 자금운용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정기적인 입증 필요. 이외 지자체 ESG채권 발행 금지 및 ESG 평가기관과의 계약 금지 등
- 
- 1월 미국 의회는 연기금 자산운용사가 투자 결정 시 ESG 고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이후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무력화함

---

\* 한국ESG기준원 책임투자본부 책임투자팀 연구원, 02-6951-3728, jmpark@cg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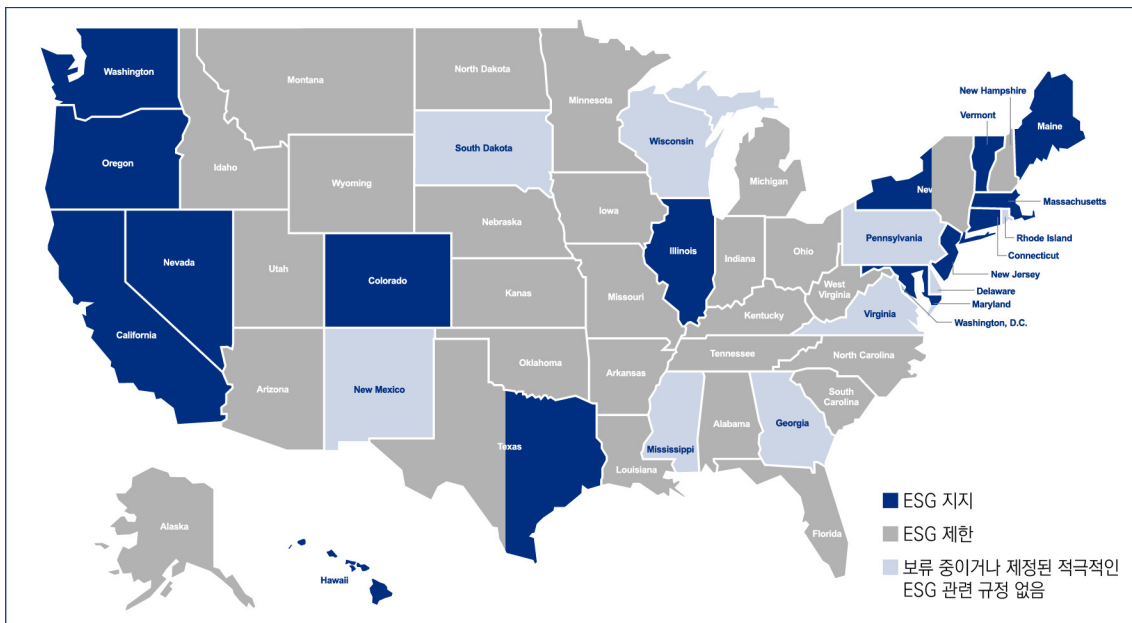
1) Top trade group mounts legal challenge against Missouri after ESG backlash, Reuters, 2023.08.11.

- 지난 11월, 미국 노동부(DOL)는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 시 ESG 고려를 허용하는 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의회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당 규칙 반대를 50대 46으로 통과시킴
-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연기금 펀드매니저가 투자 결정시 재무적 요인만 고려하도록 한 법안을 ESG 관련 요인까지 고려하도록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결의안 반대에 대해서도 임기 중 첫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저지함

□ 국제금융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국 37개 주에서 165개의 Anti-ESG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16개 주에서 22개 법안이 통과되어 누적 20개 주에서 Anti-ESG 규제를 도입함<sup>2)</sup>

\*Anti-ESG 규제 법안은 크게 1)노보이콧: 특정 산업(화석 연료, 총기류 등)을 보이콧 하는 회사와의 주정부 계약 금지, 2)ESG 차별 금지: 특정 산업을 차별하는 회사와의 주정부 계약 금지, 3)ESG 고려 금지: 주정부 지원 등 투자결정시 ESG 고려 금지로 구분됨<sup>3)</sup>

〈그림 1〉 미국 각 주별 Pro-ESG, Anti-ESG 관련 규정 현황



출처: Morgan Lewis

참고: 텍사스(TX), 뉴욕(NY)의 분할구분은 해당 주에 Pro-ESG, Anti-ESG 관련 법안이 유효하거나 보류 중임을 나타냄

2) 최근 글로벌 ESG투자 회복 동향 및 주요 이슈, 국제금융센터, 2023.08.07.

3) ESG INVESTING REGULATIONS ACROSS THE 50 STATES, Morgan Lewis, 2023.07.21.

- 미국 내에서 Anti-ESG VS Pro-ESG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달리 이외 국가들에서의 ESG 회의론 등을 비롯한 Anti-ESG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ESG 관련 글로벌 동향 및 투자 수요 등을 주시할 필요 있음